

의안번호	제 71 호
의결연월일	2003. 7.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23. 예산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6. 23.

다. 상정일자 : 2003. 6. 30.

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재무과장 : 이명선)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증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협의가 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받음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확대 (안 제2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장순근)

-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의 해당자에게 동일하게 감면을 확대해 줌으로서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므로 인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 대상자 모두에게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편의 제공과 사전홍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서 세제효과가 있을 것이며,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